

세무·회계·경영(TAM)쟁점뉴스 요약

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··· 부가윸 15~40% 확대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 만원으로 오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~40%로 확대됐 다

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경우 간이과 세자로 적용받게 된다.

다만,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시업, 건설업,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시업 시설 관리·시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됐다. 이중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추후 시 핵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를 적용하다.

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 5~30%에서 15%~40%로 상향조정됐다.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부부터다.

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100→50억원 이상, 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비중이 50→30%로 완화됐다.

감사인선임위 기업부담 준다… 외부위원 5명→3명

상장사 감시인 선임 시 갖춰야 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.

외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 한 결과다.

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'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시행안'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.

주 내용은 외부위원 최소 정족수를 5→3명으로 줄이고,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거이다

감사인선임위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로 한 위원회다. 감사위원회(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)가 없는 주권 상장법인,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으며, 인적구성은 내부위 원(감사 1명, 사외이사 2명 이내)과 외부위원(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, 주주 2명,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) 등 최소 7 명이다

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두어 정작기업 속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은 배제됐었다.

올해 감사인선임위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, 주주 1명,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된 다

국세청 모바일 홈택스… 세금업무 5분의 4 내 손에서 '뚝딱'

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판 홈택스, '손택스' 앱의 서비 스제공수준이 PC 홈택스의 80% 수준까지 상승했다.

특히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안면인증, 챗봇상담과 증 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 세 편의성을 한층 높아졌다.

현재 부가·소득·양도소득세·증여·소비세 등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·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, 올 상반기에는 상속세, 8월 중간예납 때는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다.

국세청 세금고지서도 카톡이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, 과세전적부·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, 납세 자보호·고충민원, 신고기한연장,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 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국세증명서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 서·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.

연말정산 간소화, 현금영수증,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 를 위한 수임납세자 관련 서비스도 확대됐다.

사업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보낼 수 있다.

2021 · 01 · 20 www.eAnSe.com 15